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0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정국장 직위(3급)를 신설하여 시회사무처 통솔범위를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정국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 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정국장 직위를 신설함(안 제2조제2항)
- 다. 의정국장의 사무분장을 명시함(안 제2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5. 22. ~ 5. 27.)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유성근 (☎2133-663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두고,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둔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사무처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조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 언론보도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의회보 발행 등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외교활동 등 교류 협력 지원, 의회의 예산·결산, 계약·회계·물품·재산관리, 청사 관리·경비, 교섭단체 지

원 등에 관한 사항

4. 의안의 발굴·조사 연구 및 입안·검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 법령·제도개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5.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등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주요사업
분석·평가, 공청회·토론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인사행정, 보수, 성과평가,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 민원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제도
개선 등 기타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를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무처) ① 서울특별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u>서울특 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 라 한다)를 둔다.</u>	제2조(사무처) ① ----- ----- <u>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 하 "사무처"라 한다)를 두고, 사 무처 밑에 의정국을 둔다.</u>
② 사무처에 <u>사무처장과 그 밖 에 필요한 직원</u> 을 둔다.	② ----- <u>사무처 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 한 직원</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분장한다. 1. <u>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조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2. <u>의회 언론보도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의회보 발행 등에 관한 사항</u> 3. <u>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외교활동 등 교류 협력 지원, 의회의 예 산·결산, 계약·회계·물품·재 산관리, 청사 관리·경비, 교섭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4. <u>의안의 발굴·조사 연구 및 입 안·검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u>

제5조(시행규칙) <u>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 법령·제도개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u> <u>5.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등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주요사업 분석·평가, 공청회·토론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사항</u> <u>6. 인사행정, 보수, 성과평가,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u> <u>7.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 민원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제도개선 등 기타 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u> 제5조(시행규칙) <u>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u>
--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직위 신설과 소관 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구 조정으로 인한 정원 변동 관련 비용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첨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유성근(02-2133-6632)